

프랑스판례

사망자의 사진을 유가족 동의없이 게재한 것은
유가족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서 언론자유로 정당화 될 수 없다

1 심판결

Mme Veuve Erignac et autres c/ Hachette Filipacchi et autres
파리지방법원(Tribunal do grande instance do Paris) 급속심리결정
1998년 2월 12일 판결

사실관계

주간잡지인 <파리 마치>와 VSD는 1988년 2월 12일자로 발행한 잡지에서 1988년 2월 6일 아자치오(Ajaccio)에서 피살된 코르스(Corse) 지사인 클로드 에리학(Claude Erignac)씨의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고 피로 뒤범벅된 피살체를 사진으로 보도하였다.

원고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와 같은 비참하고 통탄스러운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는 것은 일반공중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떠한 가치나 의미를 찾기 어려우며, 그것은 오로지 언론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보도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진의 게재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까운 측근들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하였기 때문에, 동 잡지의 배포를 금지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행에 따른 지체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켜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잡지사측은 공직자가 그의 직무수행 중에 공공의 장소에서 사망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당해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아세트 필리파치(Hachette Filipacchi)사와 코데지프레스(Codégipresse)사의 주장에 의하면, 동 회사에서 발행하는 잡지에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특별히 중대한 고통을 야기시킨 것이라는 주장은 특별히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사진은 이미 다른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잡지사측의 주장에 의하면, 잡지사로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심각한 정치적이고 사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킨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것이 명백한 불법이 아닐 뿐 아니라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잡지의 압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참을 수 없는 가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판결이유

생각컨대 일반대중의 정보에 대한 권리는 언론사가 이 사건과 같이 국가적인 참극에 해당되는 모든 특이한 사건에 대하여 글이나 사진 등을 통하여 독자에게 알림으로써 여론에 호소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droits fondamentaux)로서의 정보에 대한 권리(droit à l'information)는 글이나 사진 등의 보도로 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 정도의 지나침으로 인하여 당사자로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야기시켰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신 민사소송법 제 809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급속심리를 담당하는 법관(juge des référés)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코르스 지사가 피살된 예외적인 상황이 연출된 사진을 잡지에 게재하여 가족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비록 계쟁 중인 사진이 공공장소에서 촬영되었고 또 이와 같거나 유사한 사진이 다른 여타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살된 지사의 신체의 존엄성에 비추어 보거나 나아가서 아직까지 참극에 따른 공포가 가시지 아니한 상황에 비추어 보건대 가족들의 기본적인 감정의 보호라는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정보를 제공한다는 필요성은 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잡지를 압류하는 것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므로 피해배상에 관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본안 판단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신 민사소송법 제 78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입각하여 잡지사로 하여금 일정한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판결주문

신민사소송법 제 809 조 제 1 항에 비추어 보건대, 아세트 필리파치사와 코데지프레스사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파리 마치> 다음 호에 가로 15cm, 세로 15cm 의 상자 기사로 짙은 글씨체의 '법원판결문게재'라는 표제를 달고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할 것을 명한다. "파리지방법원 1988년 2월 12일 급속심리 결정은 다음과 같다: 파리마치 1998년 1월 19일자로 발행된 잡지에서 코르스 지사인 클로드 에리낙 씨의 사체 사진을 게재하여 에리낙 부인과 그 자녀들에게 중대한 침해를 가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VSD, SNC 사도 위와 같은 조건 하에서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VSD 의 다음 호 즉 1998년 2월 12일과 2월 28일 사이에 발행하는 호수에서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을 게재할 것을 명한다.

신 민사소송법 제 788 조 제 4 항에 의거하여, 파리지방법원 제 1 부에서 1998년 2월 25일 오후 1시 30분에 개정하는 법정에서 행해질 심문에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출두할 것을 명한다. 피고에 대한 소환장은 1998년 2월 20일 이전에 전달되어야 한다. 원고의 여타 청구는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심판결

SNC VSD, SNC Hachette Filipacchi et autre c/ Mme Veuve Erignac et autres
파리고등(항소)법원) (Cour d'appel de Paris)

1998년 2월 24일 판결

판결이유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1 조에서는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저작하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모든 시민은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 10 조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의 행사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적 사회에서는 필요한 조치에 관해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인권장전에 의거하여 민법 제 9 조 제 2 항에서는 법관은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경우 이를 차단하고 중지시키기 위하여 손해상을 명할 수 있고,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건 쟁송과 관련된 사진은 주간잡지인 VSC 와 <파리 마치>에 게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진은 코르스 지사인 지사인 클로드 애리낙 씨가 1998년 2월 6일 피살된 직후에 촬영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생각건데 이와 같은 사진을 사망자의 애도기간 중에 유가족의 동의도 없이 게재한 행위는 당사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하여 비통한 감정을 중대하게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침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건데 급속심리법관은 문제의 사진을 게재한 잡지의 압류를 통하여 사생활침해를 보전하기보다는 오히려 판결문의 게재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급속심리법관이 법원의 위화 같은 결정문을 잡지에 게재하도록 명한 것은 민법 제 9 조 제 2 항에 비추어 보건데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유가족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유가족이 요구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 살펴보건계, 잡지사의 악의나 중대한 과실에 기하여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외 잡지사의 청구는 기각한다.

판결주문

아세트 플리파치사와 코데지츠레스사는 자신들의 비용부담으로 본 판결이 선고된 날 이후에 발행되는 파리 마치지에 가로 15Cm 세로 7.5 Cmdml 상자기사로 ‘법원판결공시’라는 짙은 글씨체의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게재할 것을 명한다.

“1998년 2월 24일자 파리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다. 1998년 2월 19일자(제 2543 호) 주간지 파리 마치에 크로드 애리낙 씨가 아자치오 도로상에서 피살된 사진을 게재한 것은 당사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얻지 아니하고 게재한 것이며, 이러한 사진의 게재로 인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것이다.”

위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게재를 이항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주일에 5m 량(약 1 천 2 백만원)의 위약배상금의지불을 명한다.

(또한 VSD 사에 대하여서도 동사가 발행하는 잡지에 파리 마치지와 동일한 법원의 판결문 공시를 명한 바 있다. 위약배상금 액수도 동일하다.)

소송비용은 잡지사가 부담한다.

판결해

이 사건은 공인에 대한 암살사건 현장사진을 언론이 보도한 것에 대하여 유가족이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로 이유로 손해배상 및 잡지압류를 요구한 사안이다. 언론사로서는 피살자가 첫째 공인이고, 둘째 공공장소에서 피살되었기 때문에 피살된 현장사진을 보도한 것은 언론이 갖는 정보의 권리의 한 내용으로 보아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비록 언론사의 이러한 주장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와 같이 피범벅이 된 비참한 피살사진을 여과없이 게재한 행위는 유가족의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법원은 정보에 대한 권리 내지 언론의 자유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 11 조 및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제 10 조에서 분명히 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따라 민법 제 9 조에 의거하여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원고가 손해배상 및 잡지의 압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배척하고 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그것은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점은 인정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경우와 같이 손해배상과 압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원의 판결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이에 일정한 절충점(조화)을 찾은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만일 이 사건 사진의 당사자가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며, 공공장소가 아니고 사적인 장소에서 피살된 사진일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압류조치를 내렸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이는 미테랑 전 대통령 유가족이 제기한 미테랑의 사망한 사진을 미테랑의 집에서 은밀하게 촬영하여 보도한 사건에서 보여준 법원의 판만을 참조하면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언론중재, 1997, 여름호에 게재된 *Mitterrand et autres c /Thérond et Cogédipresse* 판결 참조). 법원에서 당해 잡지에 게재할 판결문 내용의 문구와 크기까지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이할 만한 사안이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행강제금도 동시에 과하고 있다.

비록 사안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한국에서 종래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소위 사죄광고문을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신문에 게재하도록 하던 관행이 헌법재판소의(질적일부) 위헌결정(헌재 1991. 4. 1, 89 헌마 160, 민법 제 764 조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헌재판례집 제 3 권, 149 면 이하, 이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성낙인, 언론정보법, 나방출판사, 1998, 222 면 이하 참조)에 따라 그 이후에는 이 사건과 같이 법원의 판결문게재로 바뀐 것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 LEGIPRESSE[Revue mensuelle du droit de la communication) 1998년 제 4 호(juin 1998, no 152), pp. 86-88])